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7-1314호

**풍납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사업시행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 · 공고**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99호(2005.12.15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 계획(정비계획) 고시된 풍납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2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송파구 주거재생과, 송파구 풍납제2동 주민센터 및 풍납우성재건축조합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10월 12일

송 파 구 청 장

가. 사업의 명칭 : 풍납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나. 시행 구역 :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30(풍납동 388-7외1)

다. 시행 면적 : 24,036.40㎡

1) 주택용지 : 22,756.20m²

2) 주구중심 : 1,280.20m²

라. 시행 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

마. 시 행 자

1) 명 칭 : 풍납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: 이상호)

2) 주 소 :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30

바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1) 아파트

- 대지면적 : 22,756.20m²

- 건축면적 : 5,010.43m²

- 연 면 적 : 109,715.38m²

- 층 수 : 지하3층/지상13~35층

2) 주구중심(근린생활시설)

- 대지면적 : 1,280.20m²

- 건축면적 : 639.60m²

- 연 면 적 : 5,675.00m²

- 층 수 : 지하3층/지상5층

3) 주 용 도 : 공동주택(아파트 7개동, 상가 1개동, 697세대) 및 부대복리 시설

사. 공람 기간 : 2017년 10월 12일 ~ 2017년 10월 26일(14일간)

아. 공람 장소 : 송파구청 주거재생과(6층) ☎ 02-2147-2888

풍납2동 주민센터 ☎ 02-2147-4030

재건축조합 사무실 ☎ 02-6417-3886

※ 건축계획은 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변동, 조정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공람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7-1318호

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」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7년 10월 12일

송 파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하면서 「지방세기본법」이 전부 개정(2017. 3. 28. 시행)됨에 따라, 이 규칙은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」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규칙의 목적, 정의,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, 각종 대장 등의 작성·비치,

서류의 송달 등을 규정함 (안 제1조~제5조)

나. 부과와 취소 및 변경, 구세환급금의 처리·지급대상자·충당, 납세담보의 범위 등을 규정함 (안 제6조~제10조)

다. 각종 통지의 전산처리 등을 규정함 (안 제11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(참조: 세무행정과장/우편번호 05552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/ 전화:2147-3759, 팩스: 02-2147-395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(www.songpa.go.kr)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7-1319호

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7년 10월 12일

송 파 구 청 장

1. 제정이유

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(2017. 3. 28. 시행)함에 따라,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」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」의 체계에 맞도록 이 규칙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규칙의 목적, 정의,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, 각종 대장의 작성·비치 등

을 규정함 (안 제1조~제4조)

나. 구세의 보통징수 방법 및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 (안 제5조, 제6조)

다. 납세고지서의 작성, 소인, 납기마감 처리, 체납액정리표 관리를 규정함 (안 제7조~제10조)

라. 세입징수 결과제출, 세입마감, 구세 체납액의 이월에 대하여 규정함 (안 제11조~제13조)

마. 결손처분의 결정·취소·사후관리를 규정함 (안 제14조~제16조)

바.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절차와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를 규정함 (안 제17조, 제18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(참조: 세무행정과장/우편번호 05552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/ 전화:2147-3759, 팩스: 02-2147-395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(www.songpa.go.kr)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7-1327호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7년 10월 12일

송 파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○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분쟁조정 신청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분쟁조정 신청 요건 개선 및 조정 대상 구체화 (안 제12조)

○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입주민 일정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도

록 한 조문 삭제 및 분쟁조정 신청 대상 명시

- 제12조(분쟁의 조정신청) ①항을 ‘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’로 개정

나. 조례 개정(제12조) 등에 따른 조항 및 별지 서식 정비 (안 제12조, 별지 제1~5호 서식)

○ 구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 등 정비

- 제12조(분쟁의 조정신청) ②항을 삭제
- [별지 제1호]의 ‘주택법52조제1항 및’과 첨부서류의 ‘대표자 선정 및 조정을 원하는 입주자 1/10 이상의 동의서’를 삭제

○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시행에 따른 용어 개선 등

- [별지 제1~5호 서식] 중 ‘공동주택’을 ‘공동주택관리’로 하고 ‘대표자’ 및 ‘성명’을 ‘성명(대표자)’로 하며, [별지 제1호, 제4호 서식]의 ‘의거’를 ‘따라’로 개정
- [별지 제1~5호 서식] 중 ‘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및운영조례’를 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’로 띄어 쓰고, ‘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’는 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’로 띄어 쓰며 ‘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’을 ‘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’으로 띄어 씀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(참조 : 주택관리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관리과(전화 : 2147-2950, FAX : 2147-387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(www.songpa.go.kr)를 통해
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